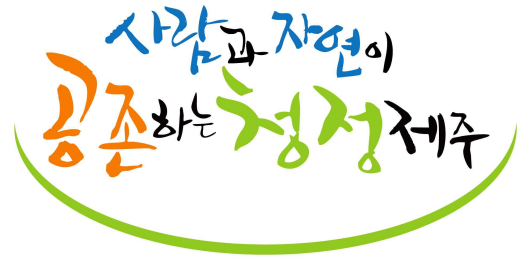


제849호. 2020. 4. 8.(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목 차

### 조 례

|                                                                        |    |
|------------------------------------------------------------------------|----|
| 제2479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
| 제248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
| 제248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  |
| 제2482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8  |
| 제248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                                      | 10 |

### 입 법 예 고

|                                              |    |
|----------------------------------------------|----|
| 제2020-37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2 |
|----------------------------------------------|----|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                                                          |    |
|----------------------------------------------------------|----|
| 제2020-49호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 ..... | 13 |
| 제2020-50호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 구축사업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고시 .....        | 13 |
| 제2020-51호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16 |

## 공 고

|                                                           |    |
|-----------------------------------------------------------|----|
| 제2020-1169호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공고 .....          | 16 |
| 제2021-1191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 ..... | 20 |
| 제2020-122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주식회사 지안) .....               | 24 |
| 제2020-122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주식회사 모아) .....               | 25 |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국향봉사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 25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바른봉사회) .....                              | 26 |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                     | 26 |

## 제 주 시

|                                                                        |    |
|------------------------------------------------------------------------|----|
| 제주시고시 제2020-120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애월읍 소길리 산 253-3번지 일원) .....       | 27 |
| 제주시고시 제2020-121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구좌읍 종달리 1736번지 일원) .....          | 28 |
| 제주시고시 제2020-1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 29 |
| 제주시고시 제2020-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 29 |
| 제주시고시 제2020-1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              | 30 |
| 제주시고시 제2020-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31 |
| 제주시공고 제2020-121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32 |
| 제주시공고 제2020-1218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33 |
| 제주시공고 제2020-1227호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 34 |
| 제주시공고 제2020-1288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3차) 공고 .....                    | 35 |
| 제주시공고 제2020-1231호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46 |
| 제주시공고 제2020-1235호 보증가능금액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46 |
| 제주시공고 제2020-1242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47 |
| 제주시공고 제2020-1243호 일반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49 |
| 제주시공고 제2020-124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50 |
| 제주시공고 제2020-124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51 |

## 서 귀 포 시

|                                                                                   |    |
|-----------------------------------------------------------------------------------|----|
| 서귀포시고시 제2020-7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내역 고시 .....                                      | 53 |
| 서귀포시고시 제2020-80호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 고시 .....                                    | 55 |
| 서귀포시공고 제2020-6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55 |
| 서귀포시공고 제2020-1016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포선, 서흥) 지역역량강화사업」<br>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변경) ..... | 58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3. 24.)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79호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설립”이란 신설·이전·재배치를 말한다.
3. “시설개선”이란 교육기관 등이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 학교설립·수용업무 담당 과장, 교육시설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 현행 도립학교나 교육기관의 설립에만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시설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및 목적의 변경(제1조)
- 정의규정 변경(제2조)
- 기금용도의 변경(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3. 24.)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80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과 관련된 안전  
제10조제2항에서 “재난”을 “재난 및 감염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안전의 범위를 감염병과 관련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감염병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보건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확대(제5조)
- 안전교육의 내용 중에 재난 및 감염병 등을 포함하여 대응능력을 키우는 실습교육으로 확대함(제10조)
-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감염병 및 예방의학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교육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제13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3. 24.)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8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 도서지역

〈나지역〉

| 기관 소재지 |            | 기관명         |
|--------|------------|-------------|
| 시      | 위치         |             |
| 서귀포시   | 대정읍 마라로 58 |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

〈다지역〉

| 기관 소재지 |                  | 기관명              |
|--------|------------------|------------------|
| 시      | 위치               |                  |
| 제주시    | 한림읍 비양도길 270     |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
|        | 추자면 대서 3 길 10    | 추자초등학교           |
|        | 추자면 대서 3 길 10    | 추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 추자면 추자로 553-10   |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
|        | 추자면 추자로 553-10   |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
|        | 추자면 신양 3 길 15    | 추자중학교            |
| 서귀포시   | 대정읍 가파로 67 번길 45 | 가파초등학교           |
|        | 대정읍 가파리 67 번길 45 |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라지역〉

| 기관 소재지 |                | 기관명         |
|--------|----------------|-------------|
| 시      | 위치             |             |
| 제주시    | 우도면 우도로 156-11 | 우도초등학교      |
|        | 우도면 우도로 156-11 | 우도중학교       |
|        | 우도면 우도로 156-11 | 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개정 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의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을 “나지역”에서 “다지역”으로 등급 조정함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함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3. 24.)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82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1,326명”을 “1,3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38명”을 “139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구 분                                      | 총계    | 도의회<br>사무처 | 본청<br>(직속기관 포함) | 교육지원청<br>(소속기관 포함) | 공립의<br>각급학교 |
|------------------------------------------|-------|------------|-----------------|--------------------|-------------|
| 총계                                       | 1,470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교육감                                      | 1     |            | 1               |                    |             |
| 일반직 계                                    | 1,320 |            |                 |                    |             |
| 3급                                       | 1     |            | 1               |                    |             |
| 4급                                       | 12    | 1          | 9               | 2                  |             |
| 5급 이하                                    | 1,290 |            |                 |                    |             |
| 전문경력관                                    | 17    |            |                 |                    |             |
| 연구직 계                                    | 7     |            |                 |                    |             |
| 연구관·연구사                                  | 7     |            |                 |                    |             |
| 별정직 계                                    | 3     |            |                 |                    |             |
| 5급 상당 이하                                 | 3     |            |                 |                    |             |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 139   |            |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br>장학관·교육연구관                | 19    |            | 16              | 3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br>장학관·교육연구관 및<br>장학사·교육연구사 | 120   |            |                 |                    |             |

□ 개정 이유

- 국제교육 업무 강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1,470명 ⇒ 1,470명(제2조)
  - 정무직: 변동없음
  - 일반직: 1,304명→1,303명
  - 전문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변동없음
  - 특정직(교육전문직): 138명→139명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3. 24.)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83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교육감이 되며,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 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제3조)
- 위원장 직무(제4조)
- 위원 및 간사에 관한 사항(제5조~7조)
- 비밀보호, 의견청취(제8조~9조)
- 수당 등, 운영 세칙(제10조~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0-37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0호) 개정(시행 2020. 5. 1.)에 따라 훈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결산·계약 등 개별 행정규칙과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한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다. 기금 관련 법령 및 개별 기금 조례 외에 기금 집행의 필요사항을 반영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회계과
- 전화·전송: (064) 710-6612, Fax (064) 710-6639
- E-mail: wheel216@korea.kr

라. 제출서식

| 입 법 안 | 수 정 안 | 수정 사유 |
|-------|-------|-------|
|       |       |       |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1. ~ 2020. 4. 20.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49호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74호(2016.3.23.)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 4. 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구역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비고 |
|---------------------------------|-------------------|------------------------|------------|-----------|----|
| 이도주공2단지3단지<br>아파트 주택재건축<br>정비구역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43,307.6m <sup>2</sup> | 2016.3.23. | 2017.4.5. | -  |

나.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다.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0. 4. 5. ~ 2022. 4. 4.

- 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기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고도완화에 따른 필수적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계획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3.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064-710-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0호

**파력발전 실패역시험장 구축사업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파력발전 실패역시험장 구축사업'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2km 전방해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전기사업(파력발전)
- 명 칭 : 파력발전 실효역 시험장 구축사업

3. 면적 또는 규모(용량)

- 부지면적 : 1,040,224.78 $m^2$
- 설비용량 : 5,000kW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김부기

5. 사업준비기간 : 2018.4월~2023.12월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7. 공사설계도서 : 게재생략

8. 주요변경내용

가. 변경내용

- 1) 대표자 : 김부기 (당초: 서상현)
  - 2) 준비기간 : 2018.4월~2023.12월 (당초: 2018.4월~2019년12월)
  - 3) 개발부지면적 : 1,040,224.78 $m^2$ (당초 : 1,036,172.32 $m^2$ )
- ※ 공유수면 점·사용 : 1,040,224.78 $m^2$

나. 변경사유

- 1) 퇴직·취임에 따른 대표자 변경
- 2) 1번정박지 500kW(250kW×2기)) 발전설비 부하출력검사 및 2~5번 정박지 발전장치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공사기간) 연장
- 3) 1번정박지 허가 면적 9,090 $m^2$ (공유수면 허가제2012-5) 추가 및 3번 정박지 면적산출 오류 정정

9.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특별법 제148조관련)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 협의(제주시 해양수산과) 사항 이행
-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협의(제주시 문화예술과) 사항 이행
- 수산자원관리 수면이용 관련 협의(수산정책과) 사항 이행
- 기타 인·허가 의제사항 : 종전과 같음

< 붙임 : 사업시행 위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1호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20년 농업생산기반(배수개선사업)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 4.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다 음 -

1. 사 업 명 :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의 목적 :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역에 배수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에 기여

3.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색달동 일원
4. 사업시행면적 : 수해면적 85.1ha(유역면적 461.3ha)
5. 사 업 개 요 : 배수로 L=4.62km
6. 총 사 업 비 : 금12,262백만원(국비 100%)
7.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3년
8. 사 업 효 과 : 농경지 침수방지로 토지 이용율 증대 및 영농 환경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9.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장
10.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배수개선사업)
11. 편입토지조서 : 게재생략
1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 : 게재생략
13. 승인조건 : 게재생략
14. 기타사항 : 관계 도면 등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2),
  - 서귀포시 건설과(☎064-760-2732)에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169호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8,959백만원 내외('20년 예산액 범위)
- (지원규모) 17개소 내외('20년 지원규모 범위)

\*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보전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1. 1. 1. ~ '21. 12. 31.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시설현대화 지침서 별지 3-1~5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행정시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D등급이상이어야 함. 다만, E등급의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중장기 자생력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아케이드·고객지원센터 등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예산을 반영할 것
-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 지원내용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 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충분한 건축비 지원을 통해 화장실만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화장실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식 등 고급화하여 추진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등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 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원조건

- 도비 90%, 민간 10%
  - \* 민간부담금은 5%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 가능
  - \*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 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비·햇빛 가리개, 공설시장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도비 100%)
  - \*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참고

□ 우선지원 대상

- 당해연도('21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시장
  - \* 화재예방시설 시·도별 전체 예산의 15%이상 의무 편성 및 안전점검 D등급 이하 우선 신청

□ 우대조건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3. 신청.선정 절차

□ 사전컨설팅 신청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30(금)
- 신청대상 : 2021년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접 수 처 :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동지역), 읍·면 산업팀
  -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컨설팅 실시
- 제출서류 : 시장자문(컨설팅)신청서, 단위별 자문요청서, 사업추진 실적, 전통시장 입증서류,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 사전컨설팅 실시

- 기 간 : 2020. 5. 4(월) ~ 5. 29(금)
- 시행기관 :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 컨설팅 자문위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설자문
- 추진절차 : 전통시장(신청)→행정시(컨설팅의뢰)→전문기관(컨설팅 결과보고)→행정시

□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6. 8(월) ~ 6. 19(금)
- 신청대상 :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접수처 :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동지역), 읍·면 산업팀
-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컨설팅 실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 서식),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각종 동의서(붙임제3-1호~5호 서식),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 선정 절차



4. 신청.문의처

| 문 의 처 |         | 주소                 | 전화번호         | FAX          |
|-------|---------|--------------------|--------------|--------------|
| 도     | 소상공인기업과 | 제주시 문연로 6          | 064-710-3074 | 064-710-2529 |
| 제주시   | 경제일자리과  | 제주시 광양9길 10        | 064-728-2821 | 064-728-2799 |
|       | 한림읍사무소  |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 064-728-7661 | 064-728-7639 |
|       | 구좌읍사무소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 064-728-7751 | 064-728-7719 |
|       | 조천읍사무소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 064-728-7871 | 064-728-7859 |
| 서귀포시  | 경제일자리과  | 서귀포시 중앙로 105       | 064-760-2631 | 064-760-2619 |
|       | 대정읍사무소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 064-760-4071 | 064-794-2315 |
|       | 성산읍사무소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 064-760-4261 | 064-760-4219 |
|       | 표선면사무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 064-760-4471 | 064-760-4419 |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s://www.jeu.go.kr>) →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91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6호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원 규모(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

- ☐ 2021년 : 1,122억원 내외 (2021년 예산 확정 후 전국 각 시·도 지원)

2.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 신청 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참여기업”을 구성하여 신청
- \* 참여기업 : 컨소시엄에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 설치 수행

3. 지원 기준

☐ 지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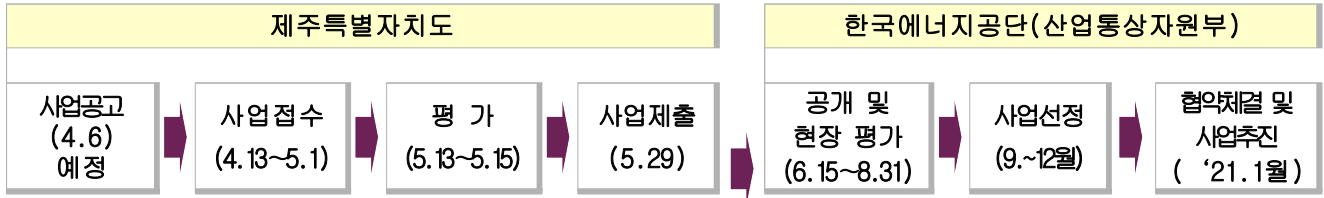
- 1개 사업당 사업비 : 30억원 이내(국비 50%이내, 도비 3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시스템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 설비 및 지원 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단가 적용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단가 공지 )
  - 총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시 우대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심사 등을 통해 조정 가능

- 사업범위는 인접한 3개마을(읍면지역) 또는 1개동지역 이내

☐ 참여기업

- 설비 시공업체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1개사업만 가능)
- 지역업체 1개 이상 참여 의무(본사가 제주에 등록된 업체)
  - 지역업체 30% 이상 지분 참여

#### 4. 선정 절차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 선정 기준

- ☐ (평가기준) 제량 및 비제량으로 구분 평가(붙임 3 참조)
- ☐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사업중 높은 점수 순으로 5개사업 이내 선정
- ☐ (선정심사)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비제량 분야 평가 실시

#### 6. 사업 접수

- (제출서류)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 [붙임 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 서류접수와 동시에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및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발표자료(PPT 20매 이내) 출력본 10부와 전자우편 또는 usb로 함께 제출
- (접수기간) 2020년 4월 13(월) ~ 5월 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등기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전자우편 : shil70@korea.kr
  - 등기 또는 방문 제출 :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제주특별자치도청 저탄소정책과(연동)
  - \* 전자우편 또는 등기제출('20.5.1까지 접수분에 한함)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064-710-2592)
- ※ 첨부(1,3,4)서류 온라인(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 등록 : '20.4.13 ~ 5.1
- \* 시스템 ID, 비번은 한국에너지공단 발급 협의 후 사업별 부여 예정으로 참여기업은 사전 요청 바람

#### 7. 관리사항

##### [일반사항]

- ☐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권,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소시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 주민과 참여기관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없음
-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모니터링설비 포함)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상 에너지원별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sup>+</sup>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의무화

-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준비용은 REMS에 공지,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 사업비 내 설계 및 감리비 구성

-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3% 내로 설계 및 감리비 구성

\*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

□ 신재생설비 관련 자기부담금 외 민간 추가비용부담 금지

-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신재생설비 설치비 외 없어야 함

(단,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제외)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신청개소별) 제출

- 신청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확약서 누락 시 해당부분 사업취소(추가 제출 불가)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가능 시설(건물, 주택 등)에 한함(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신청 시 개소별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첨부 필수. 축사는 축산업등록(허가)증 발급시설에 한함

□ (지원 제외) 아래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등(환경 부사업 중복)
-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
- 지열은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됨

□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주관 기관, 참여기관)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에너지원의 전체 사업비에 대해 발행하여야 함

□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m<sup>2</sup>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대상
- 설치의무화 대상 건물은 이행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사전 이행여부 확인)

[참여기업 관련]

- ☐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신청을 위하여 일부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 마감 기한 준수)
- ☐ (모니터링업체 컨소시엄 포함 및 평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을 위해 참여기업 구성 시 모니터링업체 포함 및 연동률 평가
  - 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REMS 사이트(<https://rems.energy.or.kr>) 게시판-자료실-RTU연동현황 참조)
  - REMS 연동내실화를 위해 연동개소수 및 연동률 평가(3점)
- ☐ (감리업체 참여기업 포함)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 시공 강화를 위해 참여기업 구성 시 감리업체 포함 필수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 및 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협약 시 증빙서류 징구)
    - \*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 ☐ (시공기업 자격) 2020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2020년 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해당 에너지원에 단독으로 참여 불가, 해당 에너지원의 2020년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공동으로만 참여 가능
    - \* 해당 에너지원에 2020년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비참여기업이 사업선정될 경우, 협약 시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징구 예정
- ☐ (설치 후 성과측정) 전체 신재생설비 설치완료 후 5개월 이내에 설치를 통한 주민수용성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설문조사 및 전기료절감 분석자료 등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추진 당해연도 별도안내 예정

[설비관련]

- ☐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 설정) 신청가능한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 설정
  - 개소당 신청가능한 태양광 최대 용량 100kW
  -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통해 기존 전기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도는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70%로 설정(현장평가 시 1년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 ☐ (BIPV 인정기준 등) 건축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BIPV만을 인정하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BIPV 단가는 컨소시엄에서 사전조사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하여야 하며, 5년 제품보증이 포함된 견적을 제시하여야 함
- ☐ (태양광 결정질 모듈 최저효율제)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함
- ☐ (3kW 초과 건물형 태양광 구조안전) 신재생설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kW 초과 건물설치형 및 BAPV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 (연료전지) 사업 신청 전 활용 및 경제성에 대해 사전 검토 필요
  - 주택용은 월 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현장평가 시 1년 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 건물용은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닛), 소형풍력(소형풍력 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http://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 메뉴

#### 8. 기타 사항

-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6호(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222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등록일자     |
|-----------------------|---------|-------|-----------------|----------|
| 정보통신공사업<br>(제640153호) | 주식회사 지안 | 윤상덕   | 제주시 조천읍 신촌5길 13 | 2020.4.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22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등록일자     |
|-----------------------|---------|-------|------------------------|----------|
| 정보통신공사업<br>(제640154호) | 주식회사 모아 | 이승찬   | 제주시 구산서길 29, 102동 102호 | 2020.4.1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0. 3. 3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등록<br>번호 | 단체명칭  | 사무소의<br>소재지                                         | 대표자<br>성명 | 변경등록<br>년월일 | 주된사업                                                                                          |
|----------|-------|-----------------------------------------------------|-----------|-------------|-----------------------------------------------------------------------------------------------|
| 290      | 국향봉사단 | 제주시 임항로<br>37-4(건입동), 2층                            | 현명희       | '20. 3. 31. | ○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여성등의 지원사업<br>○ 지역사회기관,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개<br>○ 지역사회 문화사업 및 특색사업 발굴 및 동참 |
|          |       | ◇ 변경내용<br>• 명칭 변경<br>- 당 초 : 홍 경 애<br>- 변 경 : 현 명 희 |           |             |                                                                                               |

| 등록<br>번호 | 단체명칭                  | 사무소의<br>소재지                                                                                  | 대표자<br>성명 | 변경등록<br>년월일 | 주된사업                                                                                                                                          |
|----------|-----------------------|----------------------------------------------------------------------------------------------|-----------|-------------|-----------------------------------------------------------------------------------------------------------------------------------------------|
| 331      | 한국열관리시공협회<br>제주특별자치도회 | 제주시 서사로<br>69(삼도이동),<br>모다세인트빌 501호                                                          | 강병웅       | '20. 3. 31. | ○ 시공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 연구<br>및 건의<br>○ 시공업 기술요원 및 건설기술자교육<br>○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훈련<br>○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단사업<br>○ 정부의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사업 |
|          |                       | ◇ 변경내용<br>• 명칭 변경<br>- 당 초 : 제주시 신산로 33-1(일도이동), 3층<br>- 변 경 : 제주시 서사로 69(삼도일동), 모다세인트빌 501호 |           |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4. 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등록<br>번호 | 단체명칭  | 사무소의<br>소재지                | 대표자<br>성명 | 등록<br>년월일 | 주된사업                                                                 |
|----------|-------|----------------------------|-----------|-----------|----------------------------------------------------------------------|
| 421      | 바른봉사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연삼로 362, 5층 | 김애란       | '20.4.1.  | ◦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 사업<br>◦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br>◦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노력봉사 |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 4.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등록<br>번호 | 단체명칭            | 사무소의<br>소 재 지                                        | 대표자<br>성 명 | 변경등록<br>년 월 일 | 주 된 사 업                                                                                   |
|----------|-----------------|------------------------------------------------------|------------|---------------|-------------------------------------------------------------------------------------------|
| 104      | 한국해양소년단<br>제주연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임항로 111                               | 이병철        | ‘20. 4. 2.    | ○ 단위조직 관리 및 활동지도<br>○ 지방 해양소년단 육성에 관한 대책사업<br>○ 각종 해양훈련 및 스포츠 활동<br>○ 청소년 활동시설의 개발 및 운영 등 |
|          |                 | ◇ 변경내용<br>• 대표자 변경<br>- 당 초 : 김 양 옥<br>- 변 경 : 이 병 철 |            |               |                                                                                           |

제주시 고시 제2020-120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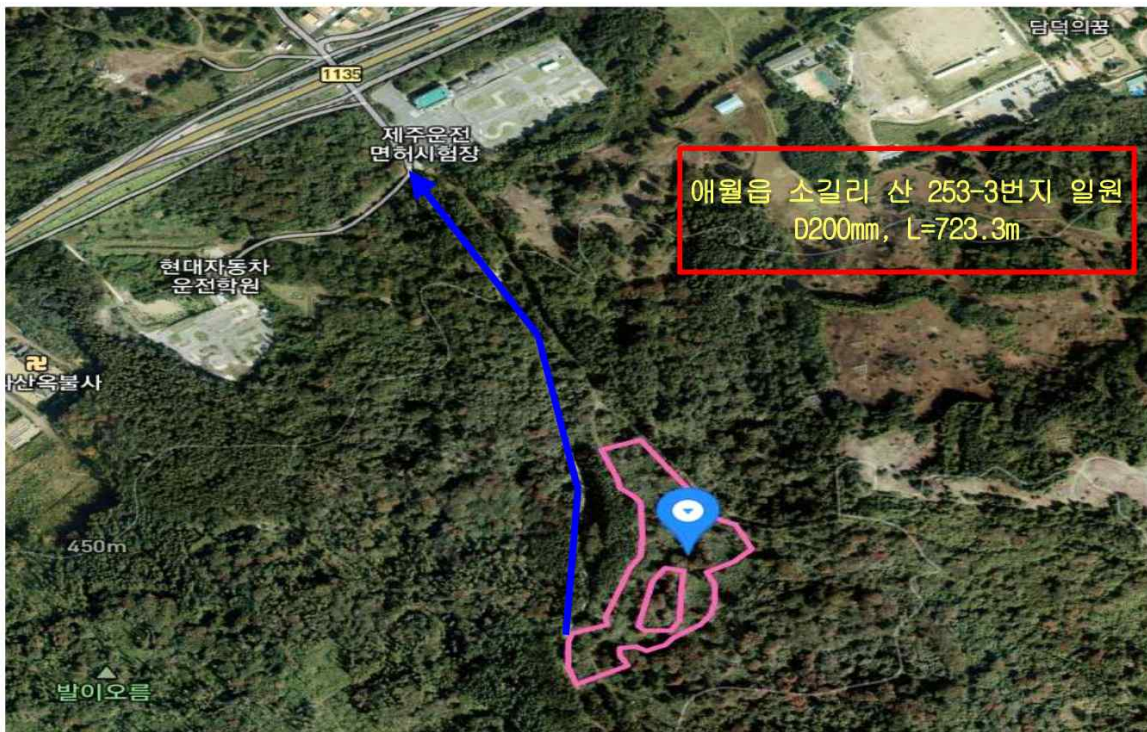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                   |
|----------|-------------------------------------------------------|-------------------|
| 시 행 자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 박 헌 *             |
|          | 등록번호                                                  | 580710-*****      |
|          |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1길 ** |
| 시 행 목 적  |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                   |
| 시 행 지 역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 253-3번지 일원                              |                   |
| 공공하수도 규모 | ·오수관(PVC이중벽관 D200mm): L=723.3m<br>·오수맨홀(D900mm): 15개소 |                   |
| 공 사 기 간  | 2020. 03. ~ 2020. 06.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0-121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4. 01.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                   |
|----------|-----------------------------------------------|-------------------|
| 시 행 자    | 법 인 명                                         |                   |
|          | 대 표 자                                         | 김 상 *             |
|          | 등록번호                                          | 710509-*****      |
|          | 주 소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 ** |
| 시 행 목 적  |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                   |
| 시 행 지 역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736번지 일원                         |                   |
| 공공하수도 규모 | ·오수관(PE관 D200mm): L=14m<br>·오수맨홀(D900mm): 1개소 |                   |
| 공 사 기 간  | 2020. 04. ~ 2020. 04.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0-1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

제 주 시 장

- 다 음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용

| 허가<br>번호 | 허가<br>년월일      | 점용·사용<br>목적 | 점용·사용<br>장 소                   | 점용·사용<br>면 적 | 점용·사용<br>기 간                    | 피허가자 | 비고                                                                               |
|----------|----------------|-------------|--------------------------------|--------------|---------------------------------|------|----------------------------------------------------------------------------------|
| 2020-2   | 2020.<br>4. 2. | 농경지 진출입로    | 제주시 해안동<br>2791번지<br>(609번지인근) | 20.7㎡        | 2020. 4. 2.<br>~<br>2035. 4. 1. | 장정순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타<br>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에 요구되<br>는 도로로의 인정 불가<br>○진입로 포장 등 인공구조물 미<br>설치 |

제주시 고시 제2020-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6.

제 주 시 장

□ 하천 점용 허가 내용

| 허가<br>번호 | 허가<br>년월일   | 점용<br>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br>면적 | 점용<br>기간                 | 피허가자 | 비고 |
|----------|-------------|------------------|-----|---------------------------------------------------|----------|--------------------------|------|----|
| 2020-7   | 2020. 4. 6. | 공작물설치(인도교<br>설치) | 부록천 | 제주시 화북이동<br>5755-1번지<br>(제주시 화북이동<br>3317-5번지 인근) | 40.2㎡    | 허가일로부터<br>시설물 존치 시<br>까지 | 제주시장 |    |

제주시 고시 제2020-1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5-82(2015.6.17.)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4. 8.

제 주 시 장

1. 결정(해제) 취지

-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되므로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0-43호(2020. 3. 23.)에 따라 도로구역이 변경(교통광장 제척) 고시되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결정(해제) 고시하는 사항임.

2. 지역·지구 등 지정 내용 및 고시일

1.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 결정(해제) 조서

가. 교통광장 결정(해제) 조서

1) 광장 결정(해제)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규 모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해제 | 1-22     | 광장  | 교통광장   | 제주시 봉개동 1419일원 | 110,589 | 감)110,589 | 0   | '15.6.17 |    |
| 해제 | 1-23     | 광장  | 교통광장   | 제주시 삼양일동 515일원 | 81,510  | 감)81,510  | 0   | '15.6.17 |    |

2) 광장 결정(해제)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22    | 교통광장 | 해제 110,589m <sup>2</sup>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교통광장 제척) 결정·고시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로 교통광장으로 의제·협의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
| 1-23    | 교통광장 | 해제 81,510m <sup>2</sup>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교통광장 제척) 결정·고시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로 교통광장으로 의제·협의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

3. 지역·지구 등 도면

○ 지형도면 등 : 열람장소 비치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함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710-2732),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51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고시 제2020-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사업 공사완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11호(2012.2.8.)로 최초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2012-208호(2012.10.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 4. 8.

제 주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반영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연구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증감    |           |    |
| 기정 | 1-1      | 마산업 연구시설 | 연구시설   | 제주시 아라일동 6-27번지 일원 | 64,443 | 64,556 | 증 113 | 2012.2.8. | -  |

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 15% 이하 | 20% 이하 | 15m 이하 |

다. 시설 결정(변경) 사유

| 변경전 면적(㎡) | 변경후 면적(㎡)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64,443    | 64,556    | 증 113㎡ | ○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

2.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br>(m) | 기 점            | 종 점                 | 사용<br>형태 | 주 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집산<br>도로 | 257       | 아라일동<br>6-27번지 | 첨단과학기술단지<br>소로1-4호선 | 일반<br>도로 | -          | 2012.2.8. | 변경<br>없음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게재 생략)

4. 열람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728-351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공사 완료 공고 내용

1. 사업시행지 위치 : 제주시 아라일동 6-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3. 사업의 명칭 :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
4. 사업의 면적 : 64,556㎡
5.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총장
6. 사업기간 : 2012. 10. 10. ~ 2019. 12. 31.
7. 준 공 일 : 2020. 4. 8.

제주시 공고 제2020-121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 등록<br>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제출기한       | 반송사유   |
|--------------|--------------------|-----|----------------|--------------|--------|
| 2016<br>- 45 | 착한여행제주도이야기<br>주식회사 | 채○기 | 제주시 탐동로 59, 2층 | 2020. 4. 16. | 폐문부재 등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3. 31. ~ 2020. 4. 16. (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3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218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2. 당 사 자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의견제출기한       | 반송사유   |
|------|-----------|-----|------------------|--------------|--------|
| 700  | 제주해피데이여행사 | 박○숙 | 제주시 원노형3길 29, 1층 | 2020. 4. 16. | 폐문부재 등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3. 31. ~ 2020. 4. 16. (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31.

제 주 시 장

제주시공고 제2020-1227호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제 주 시 장

| 시행자<br>(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제주시청                              |                     |             |
|------------------|--------------|-----------------------------------|---------------------|-------------|
|                  | 대표자<br>(성 명) | 제주시장(상하수도과장)                      | 주소                  | 제주시 광양9길 10 |
| 소하천명             |              | 음나물내                              |                     |             |
| 공사<br>(점용·사용) 개요 | 위치           | 제주시 도련1동 1102-1번지 ~ 도련1동 127-4번지  |                     |             |
|                  | 면적           | 504㎡                              | 폐천부지(廢川敷地)<br>예상 면적 | ㎡           |
|                  | 기간           | 2020. 04. 01. ~ 시설물 존치시까지         |                     |             |
|                  | 목적 및 사유      | 상수도 노후관 정비(KI-3P관, D=80mm) L=504m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제주시 공고 제2020-1288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3차) 공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및 완료지구 도시개발사업 잔여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제 주 시 장

□ 매각(분양)에 부하는 사항

〈 제주시청 자체 입찰 〉

| 지구             | 용지구분          | 매 각<br>필지수 | 면적(㎡)   | 예정단가<br>(㎡/원)               | 공 급<br>예정가격                     | 참가<br>자격 | 입찰토지 매각 및<br>낙찰자 결정방법                                 |
|----------------|---------------|------------|---------|-----------------------------|---------------------------------|----------|-------------------------------------------------------|
| 계              |               | 7          | 4,184.3 |                             |                                 |          |                                                       |
| 화북<br>상업<br>지역 | 일반상업<br>(A)   | 2          | 706.7   | 2,108,500<br>~<br>3,879,000 | 제주시<br>홈페이지<br>및<br>도시재생과<br>비치 | 제한<br>없음 |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 1필지<br>에 2인이상 신청 시 경쟁 입찰로<br>최고가낙찰자 결정 |
|                | 대규모상업<br>(B)  | 3          | 2,918.6 | 3,095,500<br>~<br>3,846,500 |                                 |          |                                                       |
| 노형2            | 단독주택<br>용지    | 1          | 229.3   | 3,558,000                   |                                 |          |                                                       |
| 삼양             | 제2종일반주<br>거지역 | 1          | 329.7   | 1,205,000                   |                                 |          |                                                       |

| 지구             | 용지구분          | 분 양<br>세대수 | 전용면적(㎡) | 타 입      | 공 급<br>예정가격                     | 참가<br>자격 | 세대 분양 및<br>낙찰자 결정방법                                    |
|----------------|---------------|------------|---------|----------|---------------------------------|----------|--------------------------------------------------------|
| 계              |               | 3          | 185.04  |          |                                 |          |                                                        |
| 화북<br>상업<br>지역 | 입체환지<br>(아파트) | 1          | 51.84   | 1층 - 근린2 | 제주시<br>홈페이지<br>및<br>도시재생과<br>비치 | 제한<br>없음 | 예정가격 이상으로 분양하고 1세대<br>에 2인이상 신청 시 경쟁 입찰로 최<br>고가낙찰자 결정 |
|                |               | 1          | 66.6    | 7층 - A타입 |                                 |          |                                                        |
|                |               | 1          | 66.6    | 8층 - A타입 |                                 |          |                                                        |

| 구 분      | 1회 입찰                                         | 2회 입찰                                         | 장 소                  |
|----------|-----------------------------------------------|-----------------------------------------------|----------------------|
| 등록기간     | '20. 4. 27.(월) ~ 4. 28.(화)<br>(09:00 ~ 15:00) | '20. 5. 11.(월) ~ 5. 12.(화)<br>(09:00 ~ 15:00) | 제주시청<br>(도시재생과)      |
| 입찰일시(낙찰) | '20. 4. 29.(수)<br>14:00부터                     | '20. 5. 13.(수)<br>14:00부터                     | 제주시청<br>(1별관 1층 회의실) |
| 계약기간     | '20. 5. 1.(금) ~ 5. 8.(금)<br>(09:00 ~ 16:00)   | '20. 5. 14.(목) ~ 5. 20.(수)<br>(09:00 ~ 16:00) | 제주시청<br>(도시재생과)      |

※ 2회 입찰은 1회 입찰에서 낙찰이 안된 물건(토지, 건물)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대행 입찰 〉

| 지구             | 용지구분      | 매 각<br>필지수 | 면적(㎡)  | 예정단가<br>(㎡/원) | 공 급<br>예정가격(원) | 참가<br>자격                                                                                                 | 입찰토지 매각 및<br>낙찰자 결정방법 |
|----------------|-----------|------------|--------|---------------|----------------|----------------------------------------------------------------------------------------------------------|-----------------------|
| 계              |           | 1          | 19,432 |               |                |                                                                                                          |                       |
| 화북<br>상업<br>지역 | 호텔<br>(C) | 1          | 19,432 | 2,460,000     | 47,802,720,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br>( <a href="http://www.onbid.co.kr">http://www.onbid.co.kr</a> )<br>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참고 |                       |

| 인터넷 입찰시작                     | 인터넷 입찰마감                      | 개찰 일시                      | 개찰 장소                 |
|------------------------------|-------------------------------|----------------------------|-----------------------|
| 2020. 4. 8.(수)<br>(10:00 ~ ) | 2020. 4. 28.(화)<br>( ~ 16:00) | 2020. 4. 29.(수)<br>(10:00) | 제주시 도시재생과<br>입찰집행관 PC |

※ 기타 상세 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 및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가능하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4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주시 자체 진행 체비지(토지 및 입체환지) 매각 사항

1. 매각(분양)에 부하는 내용

| 지구             | 용지구분          | 매 각<br>필지수 | 면적(㎡)   | 예정단가<br>(㎡/원)               | 공 급<br>예정가격                     | 참가<br>자격 | 입찰토지 매각 및<br>낙찰자 결정방법                                    |
|----------------|---------------|------------|---------|-----------------------------|---------------------------------|----------|----------------------------------------------------------|
| 계              |               | 7          | 4,184.3 |                             |                                 |          |                                                          |
| 화북<br>상업<br>지역 | 일반상업<br>(A)   | 2          | 706.7   | 2,108,500<br>~<br>3,879,000 | 제주시<br>홈페이지<br>및<br>도시재생과<br>비치 | 제한<br>없음 |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br>1필지에 2인 이상 신청 시<br>경쟁 입찰로 최고가낙찰자<br>결정 |
|                | 대규모상업<br>(B)  | 3          | 2,918.6 | 3,095,500<br>~<br>3,846,500 |                                 |          |                                                          |
| 노형2            | 단독주택<br>용지    | 1          | 229.3   | 3,558,000                   |                                 |          |                                                          |
| 삼양             | 제2종일반주<br>거지역 | 1          | 329.7   | 1,205,000                   |                                 |          |                                                          |

| 지구             | 용지구분          | 분 양<br>세대수 | 전용면적<br>(㎡) | 타 입      | 공 급<br>예정가격                     | 참가<br>자격 | 세대 분양 및<br>낙찰자 결정방법                                      |
|----------------|---------------|------------|-------------|----------|---------------------------------|----------|----------------------------------------------------------|
| 계              |               | 3          | 185.04      |          |                                 |          |                                                          |
| 화북<br>상업<br>지역 | 입체환지<br>(아파트) | 1          | 51.84       | 1층 - 근린2 | 제주시<br>홈페이지<br>및<br>도시재생과<br>비치 | 제한<br>없음 | 예정가격 이상으로 분양하고<br>1세대에 2인 이상 신청 시<br>경쟁 입찰로 최고가낙찰자<br>결정 |
|                |               | 1          | 66.6        | 7층 - A타입 |                                 |          |                                                          |
|                |               | 1          | 66.6        | 8층 - A타입 |                                 |          |                                                          |

| 구 분      | 1회 입찰                                         | 2회 입찰                                         | 장 소                  |
|----------|-----------------------------------------------|-----------------------------------------------|----------------------|
| 등록기간     | '20. 4. 27.(월) ~ 4. 28.(화)<br>(09:00 ~ 15:00) | '20. 5. 11.(월) ~ 5. 12.(화)<br>(09:00 ~ 15:00) | 제주시청<br>(도시재생과)      |
| 입찰일시(낙찰) | '20. 4. 29.(수)<br>14:00부터                     | '20. 5. 13.(수)<br>14:00부터                     | 제주시청<br>(1별관 1층 회의실) |
| 계약기간     | '20. 5. 1.(금) ~ 5. 8.(금)<br>(09:00 ~ 16:00)   | '20. 5. 14.(목) ~ 5. 20.(수)<br>(09:00 ~ 16:00) | 제주시청<br>(도시재생과)      |

※ 2회 입찰은 1회 입찰에서 낙찰이 안 된 물건(토지, 건물)에 한하여 실시함.

※ 화북상업지역 및 완료지구(노형2, 삼양) 등록 및 입찰 진행은 동시에 하며,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고

## 2. 매각(분양) 체비지 등록사항

가. 매각(분양) 체비지 응찰자는 입찰 신청 시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로 등록 마감 시까지 제주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등록기간 중 오전 9시 ~ 오후 15시 계좌 사용 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아님)

나. 낙찰자는 계약기간 이내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권을 취소하고 등록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귀속처리 된다.

## 3. 등록·입찰 및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입찰 등록시(매필지당)                                                                                                                                                                                                                                                                                                           | 입찰 및 계약 체결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참가신청서 1부(우리 시 제공)</li> <li>• 인감증명서 1부</li> <li>•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li> <li>•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li> <li>• 입찰보증금 은행 입금표(전표)</li> <li>• 대리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li> </ul> </li> <li>• 법인인 경우 위 서류에 준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도장</li> <li>• 주민등록증</li> <li>• 입찰 참가대리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li> </ul> </li> </ul> |

## 4. 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금은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40%를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납기일 이전에 완납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금고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고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매각대금의 10%)으로 전환 됩니다.

나. 체비지(토지) - 화북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개발되는 사업지구로서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 시기는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자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 제주시 홈페이지 - 자료실 - 화북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참고

다. 입체환지(아파트) -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아파트)에 관하여 위에서 정해진 납부기한 내 대금 완납 후 아파트 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건축물은 계약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등에 대하여 제주시는 부담하지 않는다.

※ 입체환지(아파트) 준공 예정 : 2021년 상반기

라.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토지, 입체환지)의 매각면적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과 확정측량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각면적과 차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면적단위 가격으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방법은 따로 명시하여 통보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마.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토지, 입체환지)의 소유권이전은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 후 이전하며, 토지 사용 시기는 토지대금이 완납된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체비지(토지) - 완료지구(노형2, 삼양)

- 노형2지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사업지구로서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매수인이 확인을 하여야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져야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주시 홈페이지 - 자료실 - 노형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참고

- 삼양지구 : 본 사업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므로 토지이용계획(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매수인이 확인을 하여야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져야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 2]

온비드 대행 진행 체비지(호텔용지) 매각에 관한 사항

1. 매각 내용(호텔용지)

| 지구     | 용지        | 위치     | 면적<br>(㎡) | 예정가격      |                | 비고<br>(용도 등)       |
|--------|-----------|--------|-----------|-----------|----------------|--------------------|
|        |           |        |           | 단가(원/㎡)   | 금액(원)          |                    |
| 화북상업지역 | 호텔<br>(C) | C1B-1L | 19,432    | 2,460,000 | 47,802,720,000 | 특별계획구역<br>(원지반 공급) |

※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참고)

2.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

3. 입찰 및 개찰 일정

| 인터넷<br>입찰시작                  | 인터넷<br>입찰마감                   | 개찰 일시                      | 개찰 장소                 | 비 고 |
|------------------------------|-------------------------------|----------------------------|-----------------------|-----|
| 2020. 4. 8.(수)<br>(10:00 ~ ) | 2020. 4. 28.(화)<br>( ~ 16:00) | 2020. 4. 29.(수)<br>(10:00) | 제주시 도시재생과<br>입찰집행관 PC |     |

※ 낙찰자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매각대상 필지로 1회만 입찰이 가능하며,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이 100분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라. 본 매각토지에 대하여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향후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개발하는 “특별계획구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을 참고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6.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입찰고객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본 용지의 입찰은 공동 입찰 참가는 가능하며, 대리 입찰 참가는 불가능하니 온비드 회원(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온비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참고)

## 7. 입찰보증금 납부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 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실 경우에는 은행업무 시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나.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 은행(하나, 신한, 우리, 부산, 기업)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보증금 입금 후 입찰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 입찰 후 낙찰되지 못하신 분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등록 시 제출한 반환용 통장계좌로 반환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입찰의 무효

-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경우에도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일 경우
-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9. 입찰 연기 및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

####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명의로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20. 5. 11일 15시까지’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계약금(매각대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전환됩니다.

※ 구비서류

-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첨부), 법인(사용)인감도장, 위임장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라. 매각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구분 납부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도금(매각대금의 40%)을 납부하고, 잔금(매각대금의 50%)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이자(연 6.08%)가 부과되며, 우리시에서 제공한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유예기한 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마. 매각면적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과 확정측량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각면적과 차이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면적단위 가격으로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방법은 따로 명시하여 통보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12.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

가. 토지의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매수자가 부담 및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다. 명의변경은 대금 완납 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전매, 양도, 저당권 및 제한 물건의 설정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3. 계약해제

-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하고 잔액만 반환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응찰자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과 소유권 이전 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입찰 참가 시 갖춘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사항입니다.
- 다. 체비지 매수자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등과 건축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 해당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별도의 심의 절차 등은 매수인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에 등록된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라.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제주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변경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마.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1588-5321)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나. 매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064-728-3543)
- ※ 기타 자료(위치도, 지구단위계획 등) 붙임 참조 및 상세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자료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토지) 조서 〉

□ 일반상업용지(A)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면적(m <sup>2</sup> ) | 지목 | 예정가격(원)   |               | 비고 |
|----------|-----|----|---------------------|----|-----------|---------------|----|
|          | 블럭  | 롯트 |                     |    | 단가        | 금액            |    |
| 1        | A3  | 9  | 247.9               | 대  | 2,108,500 | 522,697,150   |    |
| 2        | A5  | 12 | 458.8               | 대  | 3,879,000 | 1,779,685,200 |    |

□ 대규모상업용지(B)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면적(m <sup>2</sup> ) | 지목 | 예정가격(원)   |               | 비고 |
|----------|-----|----|---------------------|----|-----------|---------------|----|
|          | 블럭  | 롯트 |                     |    | 단가        | 금액            |    |
| 1        | B3  | 3  | 538.4               | 대  | 3,846,500 | 2,070,955,600 |    |
| 2        | B5  | 1  | 1,364.5             | 대  | 3,285,500 | 4,483,064,750 |    |
| 3        | B5  | 3  | 1,015.7             | 대  | 3,095,500 | 3,144,099,350 |    |

〈 화북상업지역 입체환지(아파트) 조서 〉

| 일련<br>번호 | 소재지  | TAPE         | 합계<br>(m <sup>2</sup> )<br>(①+②) | 공급면적(m <sup>2</sup> )<br>① |       | 기타공용<br>(m <sup>2</sup> )<br>② | 대지지분  | 예정가격        |
|----------|------|--------------|----------------------------------|----------------------------|-------|--------------------------------|-------|-------------|
|          |      |              |                                  | 전용                         | 공용    |                                |       |             |
| 1        | A4-1 | 1층-2<br>(근린) | 66.8                             | 51.84                      | 7.97  | 6.99                           | 38.11 | 303,000,000 |
| 2        | "    | 7층-A형        | 91.58                            | 66.60                      | 15.99 | 8.99                           | 49.01 | 273,000,000 |
| 3        | "    | 8층-A형        | 91.58                            | 66.60                      | 15.99 | 8.99                           | 49.01 | 281,000,000 |

〈 완료지구(노형2, 삼양) 체비지(토지) 조서 〉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면적(m <sup>2</sup> ) | 지목 | 예정가격(원)   |             | 비고 |
|----------|-------|--------|---------------------|----|-----------|-------------|----|
|          | 읍·면·동 | 지번     |                     |    | 단가        | 금액          |    |
| 1        | 노형동   | 3795   | 229.3               | 대  | 3,558,000 | 815,849,400 |    |
| 2        | 삼양일동  | 1601-4 | 329.7               | 대  | 1,205,000 | 397,288,500 |    |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호텔용지) 조서 〉

| 일련<br>번호 | 소재지 |    | 면적(m <sup>2</sup> ) | 지목 | 예정가격(원)   |                | 비고     |
|----------|-----|----|---------------------|----|-----------|----------------|--------|
|          | 블럭  | 롯트 |                     |    | 단가        | 금액             |        |
| 1        | C1  | 1  | 19,432              | 대  | 2,460,000 | 47,802,720,000 | 특별계획구역 |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호텔용지) 위치도 >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호텔용지) 위치도



|  |                       |
|--|-----------------------|
|  | 체비지 (호텔용지)            |
|  | 도시개발사업구역선             |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  | 교육환경보호구역선<br>(상대보호구역) |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토지) 위치도 >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3차) 위치도



|  |                       |
|--|-----------------------|
|  | 체비지(일반상업)             |
|  | 체비지(대규모상업)            |
|  | 도시개발사업구역선             |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  | 교육환경보호구역선<br>(상대보호구역) |

제주시 공고 제2020-1231호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결과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제 주 시 장

1. 대상업소

| 신고번호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 제2015-6510096-00049호 | 의료기기 판매업 | 리더스 컴퍼니 | 조*환 | 제주시 원당북로 10 (삼양일동) |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 영업소 폐쇄 |

2. 공고기간: 2020. 4. 1.(수) ~ 2020. 4. 16.(목) (15일간)

3. 행정 처분 내역 :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4. 처분 일자 : 2020. 3. 27.(금)

5. 법적근거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처분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6.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 (☎ 064-728-4054)

제주시 공고 제2020-1235호

**보증가능금액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상업체

| 상호<br>(대표자)             | 영업소재지                   | 해당업종<br>(등록번호)                | 공고내용                      | 비고                         |
|-------------------------|-------------------------|-------------------------------|---------------------------|----------------------------|
| 주식회사<br>우현건설<br>(박인자)   | 제주시 선덕로6길<br>27-7, 101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br>(제주 2015-09-04) | 보증가능금액<br>소명자료 제출<br>공시송달 | 자료 미제출 시<br>행정처분<br>(영업정지) |
| 주식회사<br>다건종합건설<br>(양석환) | 제주시 인다8길 8              | 건축공사업<br>(01-0581)            | 보증가능금액<br>소명자료 제출<br>공시송달 | 자료 미제출 시<br>행정처분<br>(영업정지) |

2. 공고기간: 2020. 4. 1. ~ 2020. 4. 16.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사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명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송달내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소명 자료 제출 요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설과(☎064-728-3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242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

|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
| 일반여행업 | 2017-3 | 한통여행(주) | 장동길<br>(ZHANG DONGJI) | 제주시 도령로 37, 1801호(노형동, 에코하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6.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7.(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243호

**일반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2. 당사자

|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
| 일반여행업 | 2016-2 | 명국여행사 주식회사 | 이재호<br>(LI ZAIHAO) | 제주시 노연로 54, 2층, 3호(노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등록기준 위반 (사무실 미확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br>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제35조 제1항 제1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가.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7.(16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 2020. 04. 17.까지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24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제출기한       | 반송사유    |
|-----------------|-----------------|-----|--------------------|--------------|---------|
| 2013-27<br>(국내) | 주식회사<br>금원인터내셔널 | 정○옥 | 제주시 과원북4길 99, 202호 | 2020. 4. 17. | 수취인불명 등 |
| 220<br>(국외)     |                 |     |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4. 1. ~ 2020. 4. 17. (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124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제출기한       | 반송사유   |
|---------|----------------|-----|-----------------------|--------------|--------|
| 2016-11 | 제주럭키투어<br>주식회사 | 강○진 | 제주시 동문로 52, 3층 (일도이동) | 2020. 4. 17. | 폐문부재 등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br>제35조<br>제1항<br>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br>1개월 | 사업정지<br>2개월 | 등록취소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0. 4. 1. ~ 2020. 4. 17. (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

제 주 시 장

서귀포시 고시 제2020-7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내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또는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1.

서귀포시장

□ 허가(협의)내역

| 허가<br>번호 | 허가<br>연월일  | 목 적                          | 장 소                   | 허가(승인)받은 자    |                  | 면적<br>(㎡) | 기 간                           |
|----------|------------|------------------------------|-----------------------|---------------|------------------|-----------|-------------------------------|
|          |            |                              |                       | 성 명           | 주 소              |           |                               |
| 2020-5   | 2020.3.4.  | 예래해안로<br>기능보강                | 상예동 980지선             | 예래동장          | 서귀포시 예래로<br>82   | 587       | 2020.3.4.<br>~<br>2050.3.3.   |
| 2020-6   | 2020.3.6.  | 바지선<br>선상납시 운영               | 동홍동 234-1지선           | 토평어촌계         | 서귀포시<br>검은여로4    | 487       | 2020.3.6.<br>~<br>2021.3.5.   |
| 2020-7   | 2020.3.11. | 표선해수욕장<br>모래조형물 설치           | 표선면 표선리 44-7<br>인근    | 서귀포시<br>해양수산과 | 서귀포시 중앙로<br>105  | 25        | 2020.3.11.<br>~<br>2035.3.10. |
| 2020-8   | 2020.3.13. | 마을안내도 및<br>홍보 언덕 등<br>설치     | 표선면 토산리 468-1<br>인근   | 표선면장          | 표선면<br>표선중앙로 74  | 150       | 2020.3.13.<br>~<br>2031.3.12. |
| 2020-9   | 2020.3.13. | 화단조경<br>(수국식재)               | 성산읍 오조리 398-17<br>지선  | 성산읍장          | 성산읍 일주동로<br>4330 | 100       | 2020.3.13.<br>~<br>2025.3.12. |
| 2020-10  | 2020.3.13. | 화단조경<br>(수국식재)               | 성산읍 삼달리 1-18<br>지선    | 성산읍장          | 성산읍 일주동로<br>4330 | 120       | 2020.3.13.<br>~<br>2025.3.12. |
| 2020-11  | 2020.3.23. | 신양포구 수산물<br>임시보관시설<br>기능보강공사 | 성산읍 고성리 602<br>지선     | 성산읍장          | 성산읍 일주동로<br>4330 | 60        | 2020.3.23.<br>~<br>2035.3.22. |
| 2020-12  | 2020.3.24. | 시흥항 준설공사                     | 성산읍 시흥리<br>11-6 지선    | 서귀포시<br>해양수산과 | 서귀포시 중앙로<br>105  | 3,902     | 2020.3.25.<br>~<br>2020.7.22. |
| 2020-13  | 2020.3.25. | 어촌뉴딜<br>300사업<br>(하예항)       | 하예동 1744-1<br>지선(하예항) | 서귀포시<br>해양수산과 | 서귀포시<br>중앙로 105  | 9,485     | 2020.3.25.<br>~<br>2050.3.24. |

□ 변경허가(협의)내역

| 허가<br>번호 | 허가<br>연월일  | 목 적                        | 장 소                    | 허가(승인)받은 자                   |                               | 면적<br>(㎡) | 기 간                               |
|----------|------------|----------------------------|------------------------|------------------------------|-------------------------------|-----------|-----------------------------------|
|          |            |                            |                        | 성 명                          | 주 소                           |           |                                   |
| 2015-13  | 2020.3.3.  | 육상해수<br>양식어업<br>취·배수시설     | 표선면 표선리<br>2946 지선     | 고성용                          | 서귀포시<br>일주동로8473<br>103동 103호 | 1,800     | 2020. 3. 3.<br>~<br>2025. 3. 4.   |
| 2018-91  | 2020.3.3.  | 육상해수<br>양식어업<br>취·배수시설     | 남원읍 태흥리<br>1154 지선     | 김경완                          | 제주시 조천읍<br>함덕12길 51           | 2,362     | 2020. 3. 3. ~<br>2024. 9. 18.     |
| 2014-112 | 2020.3.16. | 육상해수<br>양식어업<br>취·배수시설     | 성산읍 환해장성로<br>845-13 지선 | 한영로                          | 성산읍<br>섭지코지로<br>26번길 28       | 2,009     | 2020. 3. 16. ~<br>2024.11. 04.    |
| 2012-78  | 2020.3.16. | 해녀작업장                      | 성산읍 고성리<br>127-7지선     | 고성신양<br>어촌계                  | 성산읍<br>신양로80                  | 235       | 2020. 3. 16. ~<br>2025. 3. 15.    |
| 2014-69  | 2020.3.16. | 선가장                        | 성산읍 오조리<br>4번지선        | 오조리<br>어촌계                   | 성산읍 한도로<br>141-16             | 1,482     | 2020. 3. 16. ~<br>2021.12.31.     |
| 2014-59  | 2020.3.17. | 연안친수조성                     | 대정읍 하모리<br>279-1지선     | 제주특별<br>자치도지사<br>(해양산업과)     | 제주시 문연로<br>30                 | 160       | 2019. 6. 19.<br>~<br>2034. 6. 18. |
| 2015-10  | 2020.3.17. | 피복석 및<br>파제벽설치             | 표선면 표선리<br>1166지선      | 제주특별<br>자치도지사<br>(해양산업과)     | 제주시 문연로<br>30                 | 1,715     | 2020. 2. 1.<br>~<br>2050. 1. 31.  |
| 2014-128 | 2020.3.17. | 비사방지시설                     | 안덕면 사계리<br>2294-41지선   | 제주특별<br>자치도지사<br>(해양산업과)     | 제주시 문연로<br>30                 | 1,380     | 2019.12. 24.<br>~<br>2049.12. 23. |
| 2015-11  | 2020.3.17. | 월파방지시설                     | 안덕면 사계리<br>2147-30지선   | 제주특별<br>자치도지사<br>(해양산업과)     | 제주시 문연로<br>30                 | 243       | 2020. 2. 1.<br>~<br>2050. 1. 31.  |
| 2014-105 | 2020.3.17. | 육상해수<br>양식어업<br>취·배수시설     | 표선면 표선리<br>1306지선      | 송양선                          | 표선면 표선리<br>1306               | 1,280     | 2020. 3. 17. ~<br>2024. 10.14.    |
| 2014-116 | 2020.3.17. | 남제주화력발전<br>소 3,4호기<br>취배수로 | 안덕면 화순리<br>610지선       | (주)한국<br>남부발전<br>남제주발전본<br>부 | 안덕면<br>화순해안로106번<br>길,55      | 3,583     | 2019.12.15. ~<br>2034.12.14.      |
| 2014-118 | 2020.3.17. | 올레길 산책로<br>및 야자매트          | 안덕면 화순리<br>2023 지선     | 서귀포시<br>관광진흥과                | 서귀포시<br>중앙로105                | 280       | 2019.12.09. ~<br>2024.12.08.      |
| 2015-74  | 2020.3.24. | 육상해수<br>양식어업<br>취·배수시설     | 성산읍 삼달리<br>4 지선        | 오태규 외<br>2인<br>(김영자,<br>오재훈) | 제주시 고마로<br>140                | 1,904     | 2020. 1. 1. ~<br>2024.12.31.      |
| 2017-92  | 2020.3.25. | 어업용 창고 및<br>공동작업시설         | 하예동 1729번지선            | 하예동<br>어촌계                   | 서귀포시 하예동<br>1744-1            | 850       | 2017. 5. 18. ~<br>2020. 3. 25.    |

서귀포시 고시 제2020-80호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2020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6.

서 귀 포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2. 사업지구 명칭 : 남원읍 남원2지구·하례2지구 및 안덕면 동광지구
3.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남원읍 남원리 2302-3번지 일원 314필지, 380,774㎡
  -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 129필지, 92,707㎡
  - 안덕면 동광리 825-8번지 일원 125필지, 137,217㎡
4.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 지적재조사 측량 : 경계점포지 설치,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토지현황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5. 측량 및 조사 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12월
6. 토지소유자 협조사항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토지출입 협조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64-760-32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고 제2020-6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서 귀 포 시 장

다 음

1.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종류               | 사 업 명                          | 사업의 규모                               | 위 치                           | 착수 및 준공<br>예정일                     |
|----------------------|--------------------------------|--------------------------------------|-------------------------------|------------------------------------|
| 도시계획<br>시설(도로)<br>사업 | 서흥지구 도시계획도로<br>(소로2-13호선) 개설공사 | 소로2-13호선<br>도로연장: 212.7m<br>도로 폭: 8m | 서흥동 350-12<br>~<br>서흥동 1245-3 | 2017. 11. 24.<br>~<br>2021. 2. 2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흥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계획 평면도: 열람장소 비치

5. 보상방법

가.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나. 보상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7.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93, fax 064-760-3819

## 토지 및 지장을 보상비 결정조서

■ 사 업 명 : 서흥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18호선)개설공사

| 번호 | 소재지 |       |       | 이동후 소재지 및 편입지장물 |                 |                 | 편입면적<br>및 수량 | 단위 | 소유자 |                             | 관리관계 |    | 비 고 |
|----|-----|-------|-------|-----------------|-----------------|-----------------|--------------|----|-----|-----------------------------|------|----|-----|
|    | 동   | 지번    | 지적(㎡) | 지번              | 지목 및<br>지장물     | 구조및규격<br>(이용상황) |              |    | 성명  | 주소                          | 성명   | 종류 |     |
| 합계 |     |       |       |                 |                 |                 | 180          |    |     |                             |      |    |     |
| 1  | 서흥동 | 349-2 |       | 349-16          | 대               |                 | 64           | ㎡  | 대지권 | 서귀포시 서흥동 349-2 가동 나동(민우아파트) |      |    |     |
| 합계 |     |       |       |                 |                 |                 |              |    |     |                             |      |    |     |
| 2  | 서흥동 | 349-7 |       | 349-18          | 대               |                 | 112          | ㎡  | 대지권 | 서귀포시 서흥동 349-7 다동(민우아파트)    |      |    |     |
| 소계 |     |       |       |                 |                 |                 |              |    |     |                             |      |    |     |
| 3  | 서흥동 | 349-8 |       | 349-19          | 대               |                 | 4            | ㎡  | 대지권 | 서귀포시 서흥동 349-8              |      |    |     |
|    |     |       |       |                 | 유류탱크            | 철재              | 1            | 식  |     |                             |      |    |     |
|    |     |       |       |                 | 철재계단<br>(보수비포함) |                 | 1            | 식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서귀포시 공고 제2020-1016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표선, 서홍)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변경)**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표선, 서홍)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 4. 2.

서 귀 포 시 장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표선, 서홍) 지역역량강화사업

나.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7개월

다. 사업목적: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라. 사 업 비: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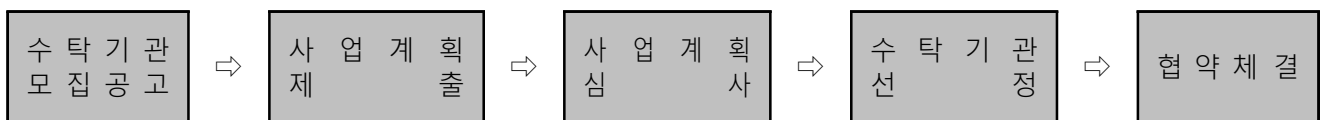
마. 사업내용(위탁사무)

- 교육부문: 리더교육, 주민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등
- 전문가 컨설팅: 읍면소재지 활성화계획(사업운영진단, 지역현안 사항 및 장단기 발전방안 등) 및 맞춤형 프로그램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2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수탁기관 대상자 선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서 공증 및 협약 이행보증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사업 추진

## 3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는 필요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업체

◆ **필요인력**(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중 지역역량강화 부문 준용):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 중 1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책임연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구 분                                | 박 사  | 석 사  | 학 사  | 전문학사 | 고 졸   |
|------------------------------------|------|------|------|------|-------|
| * <u>농어촌지역개발사업</u> 관련<br>컨설팅 실무 경력 | 3년초과 | 5년초과 | 7년초과 | 9년초과 | 11년초과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현장포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등

※ **필요인력 보유여부는 학위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로 확인**

다.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공고일(최종 선정된 자는 협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법인 또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신청방법

가. 재공고기간: 2020. 3. 24.(화) ~ 2020. 4. 3.(금)

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20. 3. 24.(화) ~ 2020. 4. 3.(금) 09:00~18:00 (시간외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서귀포시청(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5층 도시1과 도시재생팀)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붙임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참조

#### 5 선정기준 및 배점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선정방법) 및 제12조(선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나. 기술능력에 대한 종합심사로 하되, 그 비중은 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70점의 배점기준으로 함

다.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수탁기관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라. 선정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참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변경사항

(당초) 사업계획서 평가는 PT심사로 진행(발표는 수탁기관 대표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하여 발표, 증빙자료 및 위임장 제출)

(변경) 사업계획서 평가는 서면심사로 진행(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PT발표에서 서면 심사로 변경)

바.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심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결과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다. 위탁기관은 필요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마.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관계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함 ※ 협약체결 공증, 협약의 이행보증 등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에 따름.

자. 상기 공고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64-760-2993)으로 문의 바랍니다.